

■ 질의 사항

관련법 개정(2020. 12.10) 이전까지 안전진단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1항 4에 의하여 건축, 토목, 건설안전분야 점검자(특급~초급)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의 인상을 포함), 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업무(정기 안전점검)를 수행해 왔습니다.

□ 1. 기존 안전진단 업무기관의 건축, 토목, 건설안전분야 점검자(특급~초급)가 건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관련법 개정(2020. 12.10) 이전까지 수행해 왔는데 위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는지,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책임검사원 가)항에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에서 안전진단기관에 근무한 건축 토목 구조 건설안전 및 시공기술사도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석사학위는 건설(건축.토목.구조.안전)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말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책임검사원 가.나.다) 항에는 라)항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건설분야(건축.토목.구조.안전) 자격증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책임검사원 다)항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

라)항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에서 기사(대학졸업 후 자격)나 산업기사(전문대졸업 후 자격)나 똑같이 해당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되어 있어 다)항에 기사란 건설분야(건축.토목.구조.안전)를 뜻하고 라)항에 산업기사는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뜻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국토부 회신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해당 분야에 건설분야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는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말하며, 건설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양경훈 주무관(044-201-35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